

2023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산업현장의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, 대전 소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(기관) 및 인턴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대전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 청년 인턴 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2023년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- 참여대상
 - 인턴 :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
(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한 1983.1.2.이후 출생자)

㉠ 제외대상

-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
-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 - ※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, 단시간 근로(주15시간미만),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
-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※ 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(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체류 자격자는 가능)
-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
-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(정규직으로)
-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, 형제.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■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

- 기업 :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기업, 사회·경제단체, 비영리법인 등
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
기업은 참여 가능

- 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, 문화콘텐츠산업 포함
- ※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(www.venturein.or.kr)에서 확인 가능

⊖ 제외기업

- 소비,향락업체,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- ※ 소비,향락업체는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이 정하는 업종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비디오물 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 행위 영업, 대여업 등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- 단단계판매업체,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학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(단 호텔업은 가능)
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- 최근 3년(2020~2022년)이내 본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
-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다른 유형에 참여중인 기업
-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
○ 지원규모 : 140명

○ 지원내용

- (인건비) : 인턴 1인당 3개월 / 월 2,010,580원 * 2023년 최저임금

※ 대전시(국·시비) 월 1,687,500원 지원, 기업 323,080원 이상 부담

- (교통비) : 인턴 1인당 3개월 / 월 50,000원

※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, 지급하여야 하며
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. 단, 다른 정부 지원금(인건비) 이중수혜 불가

※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

○ 지원분야 : 기획, 마케팅, 홍보, 연구 등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

⊖ 제외 일자리

-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
- 커피점·마트, 요식업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·판매
-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-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
- 간호(조무)사, 아·미용사, 운전기사, 보육기사,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·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·자격을
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
-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

2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3. 1월 ~ 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 : 대전일자리시스템 www.jobdaejeon.or.kr 직접 신청
-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교부 :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
- 공고장소 : 대전광역시청(www.daejeon.go.kr)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www.djbea.or.kr),
대전일자리지원센터(<http://daejeon.work.go.kr>)
- 문의처 : 대전일자리지원센터(☎ 042-719-8335 / 8332)
- 심사 및 결과 통보 :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
※ 참여기업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추천된 인턴 우선 선발

3. 신청절차

[인턴]

-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은 연중 수시 대전일자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- 대전일자리시스템(<http://www.jobdaejeon.or.kr>)을 활용한 참여 신청
- (신청서류) 신청서(서식①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서식③), 주민등록초본, 구직신청서,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

[기업]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일자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- (신청서류) 청년인턴지원 사업 기업 신청서(서식②), 사업자등록증 사본 (대전소재 및 업종확인)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구인신청서 등 제출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**20%이내**(소수점 이하는 절상, 최대5인까지)에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. (일용근로내역은 제외)
※ 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 피보험자 수의 20%이내(소수점 이하절상)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을 제외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.

4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준수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심사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우리시 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합니다.
-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붙임 : 청년인턴 신청서 서식 각 1부.